

해방직후 냉전이 38도선의 군사적 충돌에 미친 영향

梁 寧 祚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1. 서 언
2. 해방직후 미·소군의 38도선 분할점령과 갈등
3. 미소공동위원회 기간의 38도선 충돌
4. 남·북한 정부수립 전후 38도선 충돌
5. 38도선 군사적 충돌의 성격

1. 서 언

한민족은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통일국가를 수립하는데 실패하였다. 그것은 강대국의 전후처리 방침에 의한 38선의 획정과 그후 미·소 냉전의 심화, 남·북한 정치세력의 분열 등으로 인한 것이었으며, 결과적으로 38선을 경계로 민족과 국토가 분단되기에 이르렀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한반도의 국제환경은 냉전의 성격과 그 변화

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었으며, 남·북한의 갈등은 미·소의 후원하에 체제강화와 군사적인 경쟁 양상을 띠게 되었다. 38선 획정 이후 분단의 고착과 한국전쟁의 발발은 외재적 원인과 내재적 원인이 서로 혼재되어 나타난 것이었으며, 미·소군정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38도선 상에서의 충돌은 이러한 과정을 가장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었다.

38선 충돌에 대한 기존의 관심은 주로 한국전쟁 발발과 관련하여 부분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특히 군정기간의 38선 충돌에 관한 연구는 희소한 편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충돌에 관한 연구 경향은 충돌이 남·북간의 대결을 격화시켜 내전으로 나아갔다는 평가와 전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평가, 그리고 선제공격의 책임이 대부분 남한 또는 북한측에 있다는 시각 등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시각은 종전에 주목되지 못했던 문제들을 부각시켜 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지만, 진실에 근접한 이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38선 충돌에 관한 총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최근까지 공개된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보면, 충돌은 전쟁 직전까지 줄곧 이어지고 있었으며, 시점에 따라 발발 원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미·소의 국제환경과 그 변화가 남·북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점과, 이와 반대로 남한과 북한의 국내적 요인이 미국과 소련의 정책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는가를 주목하면서 38선 부근에서 발생한 군사충돌 과정을 통해 대립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해방직후 미·소군정기 38선 충돌을 실사구시의 입장에서 사실을 복원하고, 이것이 국내외 정치적 사건과의 어떤 관련을 갖고 유발되었으며, 그리고 각 시기마다 어떤 성격을 갖는가를 해명하고자 한다.

2. 해방직후 미·소군의 38도선 분할점령과 갈등

38도선 획정과 미·소군의 남·북한 진주는 한반도의 산과 평야, 농촌과 도시, 통신과 수송망들을 일시에 분할시켜 놓았을 뿐만 아니라 보다 공업화된 북한지역과 농업이 압도적인 남한지역을 분리시켰다. 당시 남·북한의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두 지역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38선 분할점령은 남·북한 경제를 파괴시켰을 뿐만 아니라 38선이 점점 분단선으로 변질되고 고정화되어 갔다.

북한지역에 진주한 소련군은 본대가 평양에 도착하기 전에 북위 38도선 일대에 본격적으로 부대를 파견하여 남한으로 이주 또는 국외에서 귀환하는 동포들을 검문하는 한편 일체의 남행열차의 운행정지 또는 38선 근처에서 정지케 하였다. 그것은 한국에 있어서 남·북한간의 교통이 최초로 차단된 발단이며 동시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길은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

소련군은 해방 직후부터 열차운행을 정지 또는 제한하는 한편 은행, 우편국을 산발적으로 폐쇄하였으며, 1945년 8월 22일 1개 소대 병력이 금교역에 선발대로 도착했으며, 23일에는 38선을 넘어 개성에 침입, 은행에서 현금 900만원을 강탈, 개성인삼(2,000만원 상당)을 비롯하여 기타 물자를 강제 징발하는 등 동 지역에 미군이 진주할 때까지 온갖 횡포를 자행하였다. 8월 25일에는 2개 소대가 금교에 증파되고 신막에 2개 중대, 해주에 1개 소대, 26~28일 사이에 강원도의 38선상인 양양·북계·금화·화천에 각각 진주하였으며, 소련군의 1개 소대 병력은 38선 이남인 춘천에까지 진주하였다. 동지역의 주민들은 환영회를 베푸는 등 인민위원회를 조직하여 도정 이양공작을 한 바 있으며, 평강, 화천에서는 그들은 미군이 춘천에 들어오기 전까지 소련군이 매일처럼 이곳에 내려오곤 하였다.¹⁾

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구 제1권), 1967, p. 55.

미군이 한반도에 진주하기 이전에 전격적으로 북한지역 일대에 진출한 소련군은 전술한 바와 같이 각 지방에 그들의 영향 하에 자치단체를 조직하고 그 지방의 행정권을 행사하는 한편 로마넨코 정치사령부로 하여금 조심스럽게 그들 단체를 감시 또는 조정하였다. 소련군은 한국인 2세를 대동하여 진주하였으며 점차 그들로 하여금 북한 내에서의 세력교체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였다. 이런 기미를 탐지한 북한 유력인사들은 이때부터 남한으로 월남하기 시작하였고 38도선은 별다른 공식발표 없이 점점 굳어져 갔다.

실제로 1945년 9월 8일 미군이 진주한 뒤로 며칠 못되어 소련군이 한반도 문제에 관해 협력하려고 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 점차 분명해지기 시작하였다. 하지는 남한의 경제상태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자 여타 제한을 완화시키고 전국 경제와 민간행정의 통일을 확보하려고 시도하였지만, 소련군 당국은 38도선에 전술연락실 설치에 합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하지의 제안에 거의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었다.

심지어 소련군사령부는 미군사령부가 석탄과 교환할 목적으로 북한에 식량열차를 보냈을 때 석탄을 보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식량을 싣고 간 열차를 억류하기 조차 하였다. 그리고는 서울 이북지역에 대한 송전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던 것이다. 소련의 이러한 행동이 38도선을 단순한 분할선에서 장벽으로 변화시켰다. 미·소군이 38선에서 처음 대치하고 있을 무렵 38선 부근에는 남·북으로 이어지는 주요도로 10여 개를 중심으로 초소를 설치하고 있었으며, 소련군 초소 중에는 38선 이남 지역에 위치한 것도 있었다.²⁾

2) 「베천으로부터 초인스키 보고」(1946.5.14), Records of the HUSAFIK, Report Concerning the Violation of the 38th Parallel, vol.2, 1945-1950, SN.1718(군사편찬연구소 자료목록, 이하 같음), p. 289. 이 문서는 1945년말부터 1948년까지 38선 충돌문제가 수록되어 있으며 총 VOL. I - XIV(SN.1718-1730)까지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들 문서 가운데에는 소련군 제25군 보고서(영역)가 같이 수록되어 있어 자료가치를 더해주고 있다. 이 자료는 방선주 교수에 의해 새로이 발굴된 것으로 미군정 G-2보고서를 상당부분 보완해주고 있다.

이러한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하지는 북한 주둔 소련군사령관 치스차코프에게 두 차례 초청장을 보내 지역적 분할에서 빚어지는 여러 정치적·경제적 문제들을 서울에서 토론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1945년 10월 9일의 회담에서 소련군사령관은 통일에 관한 문제들은 두 점령군의 정부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 없이는 그와 같은 행동은 취할 수 없다고 답하였다.³⁾ 이 무렵에 미군정이 소련군정의 합의를 얻어낸 것은 미군정지역인 옹진지역에 미군차량의 출입을 허락한다는 정도였다.⁴⁾

38선 분할선은 미·소가 진주하였을 때부터 미·소군의 협조가 허락되지 않으면 곧바로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갖고 있었다. 그 최초의 예가 옹진지역이었다. 미군은 옹진반도의 일부분이 미군 관할 하에 두어지게 되었는데, 서울에서 이 지역으로 이르는 육로가 38선에 의해 차단되었다. 처음 미군은 옹진에 이르는 육로 수송을 소련군으로부터 묵시적인 협조로 수송로를 보장받고 있었으나, 점차 소련군으로부터 방해를 받기 시작하였다. 즉 소련군은 이 지역을 왕래하는 미군 수송차량을 검문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 관해 다음의 자료가 주목된다.

최근 개성과 옹진반도 사이를 왕래하는 미군 수송에 관해 소련군의 검문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특히 2주 간격으로 실시되는 옹진반도 수송차량과 인력수송에 관한 검문이다. 나는 미군 점령지의 행정은 미 점령군 소관이 라고 생각한다. 소련군의 수송 검문은 불합리한 간섭이다. 그곳이 황해도인 까닭으로 당신들의 관심은 이해하지만 검문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미 점령군은 문제가 있다면 해상수송을 했을 것이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다. 38이남 옹진이 나의 권한인 이상 옹진간의 미군 수송은 어떤 형태든지 검문을 받지 않고 통과되어야 한다.⁵⁾

3) 윤진현, 『한반도분단사의 재조명』, 문우사, 1993, p. 115.

4) 『치스차코프가 하자에게』(1945.10.25), 앞의 자료, p. 36.

5) 『하지가 치스차코프에게』(1946.3.15), 앞의 자료 제2권, p. 363.

주한미군사령관 하지는 용진과 개성지역의 38선 지역에서 미·소군의 협조를 위하여 북한의 소련군사령관과 회담하려고 여러 번 시도하였으나, 결국 소련군측은 이를 권한 밖의 일이라고 거절하였다. 그리하여 하지는 1945년 11월 하순 38도선의 취소를 포함한 한국문제의 해결을 위해 미국이 국제적 수준의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합참에 건의하는 한편,⁶⁾ 38선 분계선의 전체 책임구역을 도계와 군계를 고려하여 잠정적으로 재조정하도록 하지는 다음의 내용을 소련군에게 전달하였다.

황해도와 경기도 사이의 현 경계선을 경기도 경계를 중심으로 조정하고, 경기도와 강원도사이 현경계선을 강원도 춘천군 북쪽으로 조정하고, 강원도내의 선은 춘천군과 금화군 사이, 화천과 금화군 사이, 화천과 양구군 사이, 춘천과 양구군 사이, 춘천과 인제군 사이, 홍천과 인제군 사이, 평창과 인제군 사이, 평창과 양구군 사이, 동해 강릉군과 양구군 사이의 현경계선으로 하자. 상기 언급된 도계와 군계는 1945년 8월 15일부의 경계선의 세부 행정구획선으로 하자. 상기 새로운 미·소 군사책임 경계선은 다음과 같이 제의한다. 1) 황해도 전 지역은 소련군 책임지역, 2) 경기도 전 지역은 미군 책임지역, 3) 강원도 통천군·평강군·철원군·고성군·인제군·회양군·이천군·금화군·양구군·양양군 등은 소련 책임지역, 4) 강원도 화천군·홍천군·평강군·삼척군·춘성군·원주군·철원군·홍성군·강릉군·울진군·영월군은 미군 책임지역으로 할 것을 각각 제의한다.⁷⁾

하지는 미·소군이 한반도에 진주한 직후 38선의 경계는 행정적인 도계와 군계 등 행정적인 지역을 고려하여 설정하지 않고 단순히 지도상의 38선으로 구분하여 중립지대를 설정함으로써 용진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서해에서 동해에 이르는 38선 접경지를 행정구역을 고려하여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재조정하

6) 윤진현, 앞의 책, p. 114.

7) 『주한미군사령부가 스티코프에게 보낸 각서』(1946.1.22), 앞의 자료 제2권, pp. 393-394.

자고 제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소련군은 미군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는 수차에 걸쳐 치스차코프에게 서한을 보냈으나, 소련군사령부는 이전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의례적인 답신만을 되풀이할 뿐이었다. 뿐만 아니라 1945년 말경에 가서는 소련군에 의한 38선 월경사건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38도선 이남에서 소련군에 의한 절도와 공격행위가 증가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 지역은 개성선과 청단선이다. 최초 경계통제 초소를 설치할 때, 나는 미군에게 38선 이남 중립지대를 떠나도록 지시하였다.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여 우리 사이에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신도 그렇게 하도록 바란다. 38선의 정확한 위치설정은 어려운 문제이지만, 소련군이 소지한 지도를 통해 미·소군 책임지역을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분명 38선 이남에 소련군의 배치는 의도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소련군의 38선 침범은 불행한 사태를 초래할 지도 모른다. 이들을 조속히 38선 이북으로 철수시키고 차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기 요청한다. 당신이 그 위치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측에서도 기술자를 파견하여 도와주려 한다.⁸⁾

이처럼 하지는 치스차코프에게 38선 분쟁의 소지에 관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였다. 최초 38선 접경지에는 미·소군 간에 중립지대를 설정하고 남북으로 이어지는 주요 도로상에는 미·소군의 통제초소를 설치하였고 각각 책임지역을 통제하도록 하였으나, 1945년말부터는 소련군이 부분적으로 38선 이남으로 월경하거나 청단선에서는 아예 소련군이 38선 이남지역에 초소를 설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38선 분계선 부근은 미·소군 병력이 도로차단 초소를 설치한 후 늘 잠재적인 충돌 가능성을 안고 있었다.

이 시기에는 38선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공공연히 남·북을 왕래하고 있었고 또 미·소가 냉전의 기미를 보이고 있긴 하였지만 아직까지는 표면화

8) 『하지가 치스차코프에게』(1946.4.16), 앞의 자료 제2권, pp. 314-315.

시키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으므로 38도선 접경지의 상황도 심각한 상황이 초래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미·소군의 협조체계가 무너지면 곧바로 무력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은 처음부터 예견되고 있었다.

3. 미소공동위원회 기간의 38도선 충돌

(1) 1차 미소공동위원회 기간의 충돌

1946년에 접어들어 미·소군정은 앞으로 제반 남북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치, 특히 미소공동위원회 준비 등을 위해 쌍방간의 연락장교를 파견할 것을 합의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미군정은 1946년 3월 3일 소련군정에게 미군 연락장교로써 월터 초이나키, 제임스 스코트2세 중령, 월터 모나간2세 대령 등 3명을 파견한다고 전달하였고, 위급사항 발생시 그들이 사닌 장군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를 바란다는 각서를 전달하였다.⁹⁾

이에 4월 1일 소련군정도 소련군 연락장교로서 토빈대령 이바노프대령 레베데프대위(레베데프는 1주일 안에 도착할 것임) 등을 파견한다고 통보하였고, 이들을 통해 상호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였다.¹⁰⁾ 이들 연락장교들의 임무는 군정 사령부를 대표하여 문서 등을 전달하는 것이었으며, 사령부와는 항상 통신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들 연락장교단이 설치되면 곧바로 사령부와 접촉하도록 하고, 소련군장교는 가빈준장과, 미군장교는 사닌 장군과 각각 연락을 유지하여 조정하도록 하였다.¹¹⁾

9) 「제24군단 하지가 해주 제25군 치스차코프에게」(1946.3.3), p. 373.

10) 「치스차코프가 하지에게」(1946.4.1), 위의 자료, p. 337.

11) 「미 가빈준장이 모나간 대령등에게」(1946.3.9), 위의 자료, p. 372.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를 앞두고 미·소군정 간에는 이미 38선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는데, 해주-서울간 열차운행에 관한 문제,¹²⁾ 남·북간 우편교환문제,¹³⁾ 미군의 용진으로의 육로 이용에 관한 문제,¹⁴⁾ 접경지에 위치한 동산 및 부동산 소유권 문제,¹⁵⁾ 민간인 접경지 월경 금지 문제,¹⁶⁾ 관개수로 이용 문제,¹⁷⁾ 일본인 월남문제¹⁸⁾ 등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문제는 이 시점부터 미·소군에 의한 38선 월경분쟁이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관해서는 이 무렵 하지가 치스차코프에게 보낸 다음과 같은 각서에 잘 나타나 있다.

38선 남쪽에서 소련군에 의해 자행된 약탈행위와 불법월경이 증가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최초 미·소군 간에 38선 경계 통제초소를 설치할 때, 나는 이미 미군에게 38선 이남의 중립지대로 철수하도록 하였다. 당신측도 불행한 사태로 인하여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해주기 바란다. 물론 지상에서 38선의 정확한 위치설정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소련군도 지도에 의해 38선 접경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38선 이남에 소련군이 여전히 위치해 있다는 것은 의도적인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우리의 판단으로는 어떤 경우는 고위사령부로부터 허락을 받은 것도 있다. 소련군의 38선 침범은 앞으로 불행한 사태를 초래하게 될 지도 모른다. 즉시 그들을 38선 이북으로 철수시키고 다시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주기 바란다. 만일 소련군정측이 그 위치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미·소군정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접경지 설정을 위한 요원을 파견할 용의가 있다.¹⁹⁾

12) 「하지가 치스차코프에게」(1946.3.31), 위의 자료, p. 338.

13) 「하지가 치스차코프에게」(1946.4.30), 위의 자료, p. 177, p. 194.

14) 「하지가 치스차코프에게」(1946.3.15), 위의 자료, p. 363.

15) 「보성대학 박물관 김평환이 리치소장에게」(1946.4.7), 위의 자료, pp. 191-192.

16) 「소 제25군이 미군정 지휘관에게」(1947.4), 위의 자료, p. 319.

17) 「하지가 치스차코프에게」(1946.4.26), 위의 자료, p. 181, p. 212.

18) 「하지가 치스차코프에게」(1946.4.27), 위의 자료, p. 209.

19) 「하지가 치스차코프에게」(1946.4.16), 위의 자료, pp. 314-315

이와 같이 미·소 간에는 월경분경이 발생하고 있었다. 그것은 아직 38선 접경지에 확실한 표식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데도 원인이 있었지만, 위의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소련군이 의도적으로 38선 이남지역에까지 내려와 부대를 배치한데 연유하는 것이었다. 하지의 각서는 그에 대한 경고였다. 하지의 문제제기에 이어 곧바로 소련군정측에서도 항의서한이 제출되었다. 연락장교 이바노프 소장의 보고에 의하면, 해주에서 멀지 않은 38선 북쪽 판다고지역에, 일단의 한국인이 소련군 검문소를 공격하였으며 그 중에는 미군도 있었고, 양측의 사격전으로 소련군이 1명 부상을 입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소련군정측은 가빈 장군의 사건조사와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²⁰⁾

이 사건에 대해 하지는 즉시 사건의 전말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양측 연락장교들은 사건조사를 위한 토의에 들어갔다. 여기에서 토의된 내용을 다음과 같다. 미군 대표인 가빈이 지도상의 정확한 사건 위치와 시간, 그리고 미군이 포함되었다는 증거에 관해 질의하였다. 이바노프는 정확한 위치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발발시간은 4월 22일 18:00시이고, 양측 경비병들이 서로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 미군을 확인했다는 것이었다.

여기에 대해 가빈은 미 제7사단 보고 내용을 전달하였다.²¹⁾ 즉, 어제 오후 경계선부근의 미군은 한국인으로부터 소련군이 식량을 약탈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에 미군은 미군 2명과 한국 경찰 6명을 트럭으로 38선 이남 반마일 지점인 현장으로 보내었으며, 그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소련군이 트럭을 탈취하려하여 한국경찰이 공포 사격을 가함으로써 소련군이 북으로 도주하였다. 가빈은 이러한 사실을 소련군측에 전달하면서 38선 경계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불가피한 상황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가빈은 38선 이남으로 월

20) 「하지가 제7사단장에게」(1946.4.20), 위의 자료, p. 227.

21) 「미 제7사단 사령부의 38선부근 사건보고」(1946.4.23), 위의 자료, p. 223.

경한 소련군에 대해서는 미군이 체포할 권한을 갖도록 요구하였으나, 소련군측의 답변은 보류되었다.²²⁾

이에 주한미군사령관 하지는 주북한 소련군사령관 치스차코프에게 최근 월경사건이 증가되고 있는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1945년 가을 소련군측과 협의하여 월경지는 체포하여 가까운 초소로 넘기도록 합의하였으나 그 내용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38선 부근에서의 심각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38선 지점을 분명히 표식하자고 거듭 제안하였다.²³⁾

이에 치스차코프는 그의 답신에서 소련측의 입장을 밝히었다. 즉, 미군정측은 소련군이 38이남지역을 약탈,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사건들의 전말은 명확치 않을 뿐 아니라 근거없는 주장이다. 38선의 양측 경계초소는 1945년 10월 미·소군정의 합의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소련군정은 이미 그때 초소의 위치를 확인하였으므로 38선 남쪽에는 소련군 초소가 위치해 있지 않다. 지금까지 이에 관해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인 1946년 4월에 접어들어 문제가 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나 만일 문제가 된다면 당신이 제안한 38선의 표식작업에 동의한다²⁴⁾는 것이었다.

그러나 1946년 5월 7일 미소공동위원회가 무기 휴회되면서 38선의 정세는 한층 긴장되어 갔다. 38선이 긴박해지면서 소련군정측에서는 북한의 보안대를 일층 강화시키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북한의 제2차 각도 보안부장 회의의 결정서에 잘 나타나 있다.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을 계기로 하여 남조선의 김구, 이승만 등 반동분자들은 북조선에 숨어있던 반동분자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면서 갖은 수단을 다하여 북조선의 민주건설을 파괴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북조선에 남

22) 위의 자료, pp. 225-226.

23) 「하지가 치스차코프에게」(1946.4), 위의 자료, p. 216.

24) 「하지가 치스차코프에게」(1946.5.5), 위의 자료, p. 173.

이었던 반동분자는 경비망을 돌파하여 남조선으로 도망하여 그들 반동세력에 합류하려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치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수준 높은 보안간부와 경비대원을 38도선에 배치함과 동시에 각 정당 사회단체와의 연관을 민활하게 하면서 38도선 경계선의 민중과 분담하여 일을 추진할 체제를 만들고 정보사찰 등의 공작을 강화하여 감찰진을 철벽과 같이 단단하게 하여서 그들 반동분자의 준동을 막고 있다.²⁵⁾

이에 의하면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는 시점에서 소련군정측에서는 ‘수준높은 보안간부와 경비대원을 38도선에 배치함과 동시에 정보사찰 등의 공작을 강화’함으로써 38선의 긴장을 가중시켰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분위기속에서 소련군정측은 미군 항공기가 38선 이북을 월경한데 대해 강한 불만을 피력하여 항의하였다. 즉, 치스차코프는 1945년 말부터 소련군정측이 미군항공기의 월경을 금지하도록 요청하였으나, 1946년 1월 12일과 20일 미 B-26 항공기가 해주공항을 수차례 선회하였고, 5월 10일 11:05 정찰기가 38선을 침범, 구화리 기지 등을 정찰하였으므로, 이러한 사건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란다는 것이었다.²⁶⁾

이 항의서한을 받은 하지장군은 사건을 조사하여 위반사건이 확인되면 관련자를 처벌할 것이라는 답신을 보내었다.²⁷⁾ 그러나 사건을 조사한 결과 그 지역에는 미군 B-26이 없다고 확인되었다. 다만 기상악화나 도상의 판단착오로 월경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보고가 있었다.²⁸⁾ 하지는 예하 공군부대에 항공기 월경은 심각한 사건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도록 지시하였다.²⁹⁾ 따라서 미 항공부대들은 동경과 옹진지역의 비행과 특별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김포기지 37도 이북 5마일지점에서의 비행을 전면

25) 하기와라 료, 『한국전쟁』, 한국논단, 1995, pp. 114-115.

26) 『하지가 치스차코프에게』(1946.5.11), 위의 자료, p. 153, p. 300.

27) 『하지가 치스차코프에게』(1946.5.12), 위의 자료, p. 148, pp. 151-152.

28) 『프랑크가 제24군단 사령부에게』(1946.5.13), p. 299.

29) 『하지가 제308폭격단에게』(1946.5.13), 위의 자료, p. 298.

금지하였다.³⁰⁾ 그러나 현지 항공부대들의 보고에 의하면, 월경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멕시코와 캐나다의 분쟁의 예에서처럼 완전히 근절하기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³¹⁾

소련군정측에서 계속해 이 문제를 지적하자, 하지는 항공부대에서 올라온 보고서들을 기초로 치스차코프에게 서한을 보내었다. 즉, 그는 항공기의 월경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것이 확인되면 관련자를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미군 조종사들 중에는 한국 지형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또한 서울을 출입하는 민간항공기도 많은 편이므로 이들이 부지불식간에 38선 접경지를 비행할 수도 있음을 양해해주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아울러 차후 월경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소련군측이 식별하여 미군정에 통지해 주기 바란다고 하였다.³²⁾ 이러한 상황은 소련군측도 유사한 상황이었다. 즉 8월 25일 소련 항공기가 지형의 미숙으로 인해 미군의 허가도 없이 김포비행장에 착륙하는 사건이 있었다.³³⁾

그러나 소련군정측은 항공기의 월경뿐만 아니라 해안에서의 사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였다. 즉, 5월 17일 서해안 용단포에서 북한의 선박 2대가 피납 되었는데, 북한경비대가 이를 찾아 나섰다가 미군 정찰대의 사격을 받고 구금되어 석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³⁴⁾ 치스차코프는 이와 유사한 사건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금까지 구금된 선박과 북한경비대원들을 즉시 귀환해 주도록 요구하였다.³⁵⁾ 이에 미군정측은 사건의 전말을 조사한 후 북한측의 선박은 38선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미군이 이들을 심문하기 위해 옹진으로 이송한 것이며 조사가 끝나면 곧바로 귀환시킬 것이라는 답신을 보내었다.³⁶⁾

30) 「하지가 제308폭격단에게」(1946.5.16), 위의 자료, p. 296.

31) 「제308폭격단이 하지에게」(1946.5.20), 위의 자료, p. 297.

32) 「하지가 치스차코프에게」(1946.8.7), 위의 자료, p. 275.

33) 「미 초인스키가 샤넌에게」(1946.8.26), 위의 자료, p. 568.

34) 「치스차코프가 하지에게」(1946.5.18), 위의 자료, p. 283.

35) 「치스차코프가 하지에게」(1946.6.7), 위의 자료, p. 234.

한편 이 무렵 미소공동위원회는 미·소간의 심각한 의견차이로 인해 일단 결렬되었으나, 그동안 양측에서 잠정 합의한 38선 표식작업을 위한 공동조사반 운영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하여 실무작업을 추진하고 있었다.³⁷⁾ 다음의 보고서에는 그동안 추진되었던 공동조사단의 실무작업이 잘 나타나 있다. 즉, “공동 국경조사단은 서해안지역에서부터 배천까지 38선 표식작업을 마치고 동쪽으로 계속 조사를 할 계획이다. 지금 배천선까지 확인된 소련군의 도로차단 초소 10개중 8개가 38선 북쪽으로 물러났다. 해주-청단선 도로차단 초소는 38선 이남에 위치해 있지만, 소련군 건물이 있기 때문에 잔류를 허용하였다. 초소이동에 관해서 소련군과 별 마찰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38선 표식은 마을과 지형을 고려하여 설정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새로운 표식이 완료되면 그 지도를 미·소 양측이 각각 소지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³⁸⁾는 것이다.

그러나 미·소군 38선 조사 작업은 이 무렵 극심하게 만연되고 있던 콜레라 전염병으로 인해 불가불 연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³⁹⁾ 양측은 콜레라로 인해 남·북간의 피해상황이 늘어나자 공식적인 38선 왕래마저도 자제하였으며, 특히 38선상에 정찰병력을 증가시키고 검문을 강화하여 민간인 월경을 봉쇄하였다.⁴⁰⁾ 따라서 5월부터 추진되고 있던 38선 공동조사단은 그 본연의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사실상 중도 중지하고 말았으며, 그 결과 38선 분쟁의 소지를 해소하지 못하였다.

한편 38선 공동조사단이 표식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도 소련군정측은 미군에 의한 월경사건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다.⁴¹⁾ 그 사건들 중 하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5월 23일 10여명의 한국군과 경찰이

36) 「하지가 치스차코프에게」(1946.6.16), 위의 자료, p. 134.

37) 위의 자료, p. 310.

38) 「배천으로부터 초인스키 보고」(1946.5.14), 위의 자료, p. 289.

39) 「미 연락장교가 하지에게」(1946.7.15), 위의 자료, p. 065.

40) 「초인스키가 샤닌에게」(1946.7.17), 위의 자료, p. 057.

41) 「치스차코프가 하지에게」(1946.5.15), 위의 자료, p. 295.

자동차로 양양의 38선 북쪽 2km 지점인 피안리로 침입, 이유없이 마을사람 7명을 체포하여 강릉으로 이송하였다는 것이었다. 한국경찰들이 38선의 위치를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침입한 것이라고 항의하였다. 이에 25일 클라크 소장이 8명의 장교를 대동하고 양구동남 통제초소에 도착하여 38선 위치를 정확히 지키도록 주의를 주었으며, 또 피납된 사람들은 즉시 귀환시키겠다고 하였다. 소련군정측은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앞으로 그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 조치할 것을 요청하였다.⁴²⁾ 하지 장군은 즉시 이 사건을 조사하도록 예하부대에 지시하였으며 그 결과 피안리 마을은 38선 이남 2.5마일에 위치한 미군통제지역임을 소련군정측에 전달하였다.⁴³⁾

이처럼 38선 접경지 마을에서 위반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한 것에는 마을의 소속이 미·소 어느 쪽의 통제를 받는지 불명하기 때문인 경우도 있었는데, 개성지구 화장리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즉, 당시 화장리 주민들의 진정서에 의하면, 38선 접경지에 위치한 개성지구 연백군 화성면 화장리 마을 132호는 미·소군 진주 후 미·소군정 어느 쪽에 편입되느냐를 놓고 많은 분쟁이 있었다. 그리하여 1945년 12월 22일 북한 인민위원장과 남한 면장의 합의하에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72호는 남쪽, 40호는 북쪽 관할이 되어 마을이 분단되었다. 그런데 1946년 5월 21일 소련군 2명과 북한경비대 3명이 불법 월경하여 이 마을 점거하였으며 그동안 미군정에 협조한 주민들을 체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소련군 통제 하에 있는 이 마을의 위치를 정확하게 측량하여 남쪽의 관할로 결정해 달하는 것이었다.⁴⁴⁾ 이와 같이 38선 접경지에 위치한 마을은 38선과 통제의 표식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 양측간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와는 달리 분계선상의 38선 표지가 모호하여 발생한 사건들도 있었다.

42) 「치스차코프가 하지에게」(1946.5.27), 위의 자료, p. 263.

43) 「하지가 치스차코프에게」(1946.6.6), 위의 자료, p. 233.

44) 「하지에게 보낸 진정서」(1946.6.20), 위의 자료, pp. 103-106.

7월 1일 배천방면 38선 이북 150미터 지점에 위치한 소련군 2번 초소에서 충돌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미군 제7사단 제32연대 제2대대 F중대 미군이 소련군의 한국경찰 구타사건을 보고받고 차량으로 한국군 2명, 경찰 2명을 대동하고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그 사건 지점은 38선 남쪽이라는 미군의 판단과는 달리 38선 북쪽 300야드 지점이었다. 소련군이 도주하자, 이들은 중지하라고 명령하면서 지면으로 위협사격을 가함으로써 사격전이 전개되었다. 이들은 그 지역이 소련군정 통제지역임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 사건 직후 미군 조사단이 사건의 전말을 조사한 결과 그 지역은 소련군지역이며 미군에 의해 사격이 먼저 개시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⁴⁵⁾ 이 결과보고에 따라 미군정은 사건재발을 막기 위해 F중대 40명을 투입하여 배천부근의 38선 미·소군 통제지역을 점검, 38선 이남 800야드 지역에는 미군지역 표식을 하였고, 아울러 38선 정찰병력에게 사격은 자위를 위해서만 반드시 하도록 지침이 하달되었다. 또한 이 사건의 책임을 물어 대대장을 교체하였다.⁴⁶⁾ 이 사건은 미군정이 책임장교를 면직시키고 대대장을 교체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이러한 배천사건과 거의 같은 시기, 상직동 등에서는 소련군이 38선 이남에 위치하여 미군과 마찰을 빚은 사건도 있었다. 7월 8일 미군 정찰병력이 사직동에 도착했을 때 그 마을에는 소련 정찰병들이 주둔하고 있었다. 결국 소련군은 38선 이북으로 돌아갔으나 이날 밤 다시 월경하였다.⁴⁷⁾ 이러한 사건 외에도 미·소군정 간에는 통제지역이 명확히 결정되지 않아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는 곳이 상존하고 있었다. 서해 통감포 지역의 경우 미 경찰이 ‘이 지역은 남한소속임’이라 한·미·노어 간판을 걸고 있었는데 소련군정측에서 그 지역을 38선 북쪽이라 주장하고 미군정찰을 철수시키도록 요구하였다.⁴⁸⁾ 그런데 미군 조사결과에 의하면 그 지역은 분명 38선 이

45) 「치스차코프가 하지에게」(1946.7.12), 위의 자료, pp. 062-063.

46) 「미 제7사단장 부르스가 제24군단사령부에게」(1946.7.15), 위의 자료, pp. 059-061.

47) 「하지가 치스차코프에게」(1946.7.25), 위의 자료, p. 037.

남에 위치해 있는 것이었으며 소련군측의 주장은 지도상의 지명표기가 미군측과 서로 다르기 때문이었다.⁴⁹⁾ 소련군의 지도에는 ‘상바리’라고 표기된 지명은 미군의 지도에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문제가 된 지역은 38선 이남 ‘통감포’ 임이 확인되었다.

한편 개성의 미군 방첩대의 보고에 의하면, 38선 이남인 화장리 사난동 일대에 소련군이 주둔해 있었다. 이 지역은 38선 남쪽 200야드에 위치해 있었으며 이전까지는 소련군이 없었으나 10월 10일부터 주둔하기 시작하였다. 이 지역 주민들은 소련과 북한이 이 지역을 통제하고 있다고 하였다. 주민들이 타내동, 사난동 일대에 140여명의 소련군과 북한군이 있다고 진정함에 따라 미군 경찰을 투입하여 그것이 사실임을 확인하였다. 소련군과 북한군은 38선의 정확한 위치를 모르고 있으며 그들은 다만 위의 명령에 따라 배치된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그들은 사난동 일대가 38선 이남이라고 해도 미·소 공동조사단에 의해 소련군통제지역으로 표지가 결정되었으므로 오히려 미군이 들어올 수 없는 지역이라고 하였다.⁵⁰⁾ 이후 이 지역에서의 미·소군 간의 분쟁은 계속되었다.⁵¹⁾

이렇듯 38선의 분쟁이 증가하는 이유는 38선상의 표식이 적절치 못한 것이 큰 원인이 되고 있었다. 9월 미 제7사단장 브루스 소장의 보고에 의하면, 청단선에 설치된 38선 표식은 미·소 공동조사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지만 현재 소련군은 그 협정된 38선의 1마일 남쪽까지 내려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소련군은 협정선을 재설정하는데 대단히 비협조적이라고 하였다.⁵²⁾ 소련군이 청단의 38선 이남을 점령하고 있는 지역은 대체로 태천, 만동, 오이도, 내이도, 신기 등이었다.⁵³⁾ 이에 대해 소련군정의 입장은 미

48) 「치스차코프가 하지에게」(1946.7.30), 위의 자료, p. 029.

49) 「하지가 치스차코프에게」(1946.8.10), 위의 자료, p. 010.

50) 「소련군의 38도선 침범 보고」(1946.10.18), 위의 자료, p. 474.

51) 「헤렌이 샤닌에게」(1946.10.24), 위의 자료, p. 472.

52) 「미 제7사단장 브루스 소장이 제24군단사령부에게」(1946.9.19), 위의 자료, p. 544.

53) 「미 제7사단장 브루스 소장이 제24군단사령부에게」(1946.9.24), 위의 자료, p. 532.

· 소군의 경계초소는 5월부터 미·소군(초이스키와 토빈중령)간의 공동조사단에 의해 결정되었으므로 재설정 작업을 요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며, 38선 이남지역에 소련군 초소가 배치되어 있다면 조사하여 시정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 일부지역에서 미군이 소련군 초소에 접근하여 물러가도록 종용하고 있는 것은 공동조사단의 설정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⁵⁴⁾ 미 제7사단의 보고에 의하면 이 무렵 실제 소련군은 38선 재설정에 관한 협의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다.⁵⁵⁾

이에 미군정측에서는 즉각 문제가 된 청단지역에 소련군 초소의 소재를 파악하였다. 조사일정은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38선 접경지를 정찰하여 모든 소련군 초소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청단선에 5개의 새로운 소련군 초소가 위치해 있다고 파악되었다. 내이도(관측소, 사병 4명, 전화), 오이도(소련군 대위와 사병, 초소), 태촌(소련군 중위, 사병 40명), 만동(소련군 중위, 사병 20명), 신기(도로차단막 2개) 등이었다. 제32연대 제2대대 정찰결과에 의하면, 이 지역에 소련군이 9월 11일부터 배치되었고 초소 설치작업은 약 2주간동안 소요되었다고 하였다. 이들 병력은 황해도 소련군 제258사단 예하부대라고 하였다.⁵⁶⁾ 그리하여 하지장군은 몇 차례 소련군정에게 서한을 보내어 청단선 38선 이남에 소련군 초소 5개의 위치를 확인했으며 즉각 이들을 철수시킬 것을 요구하였다.⁵⁷⁾

한편 강릉지역 명지리, 소림리, 대치리 등의 마을에는 현재 38선 표식이 38선 남쪽 600야드 지점에 설치되어 있었다. 따라서 38선 표식 지점과 38선 사이의 농지의 추수가 문제가 되고 있었다. 소련군이 북한경비대와 함께 이 지역으로 넘어와 농부를 납치하고 곡식을 수확해 간다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농부들에게 미군 초소의 상황을 심문하기도 하였다.

54) 「치스차코프가 하지에게」(1946.9.26), 위의 자료, p. 534.

55) 「미 제7사단장 브루스 소장 보고」(1946.9.30), 위의 자료, p. 521.

56) 위의 자료(1946.9.26), p. 526.

57) 「하지가 치스차코프에게」(1946.10.2), 위의 자료, p. 519.

따라서 이 지역을 정찰한 미 제7사단 기병정찰부대는 즉시 동해안지역의 38선을 재설정할 것과 38선 표식을 600야드 복상시킬 것을 사단장에게 건의하였다.⁵⁸⁾ 그러나 38선 분계선 설정의 혼선은 소련군의 비협조로 계속되고 있었다.⁵⁹⁾

소련군과 북한경비대, 북한청년단체 등의 월경 및 약탈건수는 추수기인 10월에 접어들어 더욱 증가하고 있었다. 이런 사건은 주로 38선 표식이 불명한 지역이나 군이 상시 배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였다.⁶⁰⁾ 따라서 미군정측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38선 경비를 위한 경찰부대를 신설하여 투입하기로 하였다. 미 제7사단 보고에 의하면, 사단의 정찰활동을 줄이고 38선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38선의 초소를 증가하고 증가된 초소에는 한국경찰을 투입한다는 것이었다. 경찰병력의 편성과 초소의 설치는 8월 29일 한국경찰측이 준비한 계획서에 의거하였으며, 경찰들의 정찰은 소로까지를 통제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미군과 한국 경찰간에는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⁶¹⁾

8월 29일자 한국경찰의 38선 경찰병력 편성 계획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즉, 현재 38선상에는 테러, 무장충돌, 첩자, 공산주의 선전 등 공공질서를 파괴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 그 방안의 하나로 38선 경비경찰을 편성하여 기지와 초소를 여러 지점에 설치한다. 경찰병력은 정사복 경찰과 정보원 등을 중심으로 A단(총 600명), B단(총 400명) 등 2개단을 편성한다. A단 경찰본부는 연백군 배천에 설치하고 용진(2개 초소), 연백(5개), 개성(2개), 청단(1개), 파주(3개), 포천(1개), 가평(1개) 등 총 본부 1개 18개 초소를 배치하며, B단 경찰본부 인제군 남부에 설치하고 춘천(3개 초소), 홍천, 강릉(5개 초소) 등 본부

58) 「미 제7기병정찰부대가 제7사단에게」(1946.9.19), 위의 자료, pp. 497-504.

59) 「헤렌이 사단에게」(1946.10.15), 위의 자료, pp. 466-468.

60) 「미 제7사단 보고」(1946.10.16), 위의 자료, p. 022.

61) 「미 제7사단 보고」(1946.10.17), 위의 자료, pp. 13-14.

1개와 11개 초소를 배치한다는 것이었다.⁶²⁾ 38선 경비경찰 편성을 위한 비용은 인건비가 10,912,940원, 운영비용 249,500원, 일반비용 126,428,000원 등으로 세부적으로 계획되었다. 이 계획서에 의하면 A단의 경우 초소의 명칭이 울릉·울포·창파·고려·운막·양문·우포·고읍·포운·오현·화천·만성·갈산·팔학·상문·초리·김연·운호·배천 등이었다.⁶³⁾

이와 같이 10월 시점 미군정이 38선 일대의 경비를 보장하기 위해 한국 경찰병력을 투입할 무렵, 소련군과 북한경비대의 월경사건은 더욱 증가하였으며 충돌의 강도도 격화되고 있었다. 이 무렵 사건이 증가되고 있었던 데에는 남·북의 경찰과 청년단체간의 갈등 격화도 한 원인이 되었다. 미군정 특별조사실의 보고에 의하면, 10월 30일~11월 1일간 개성지역에서의 조사결과, 사건의 상당부분이 남·북의 경찰과 청년단체의 분쟁에 의해 야기된 것이라고 하였다.⁶⁴⁾ 실제 이 무렵 충돌사건에 관한 보고서를 분석하면, 남·북한의 경찰과 청년단체들 간의 갈등으로 악화된 측면이 있었다. 즉, 경기 연백에서는 한국 경찰복장을 한 북한 청년 25명이 월경하여 남한인을 납치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⁶⁵⁾ 그로부터 며칠 뒤 연백 주화과출소는 한국 경찰 5명이 북한의 경비대 2명과 자경단 10여명으로부터 기습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⁶⁶⁾

청단지역에서는 북한주민 700여명이 대규모로 월경하여 추수한 곡식을 약탈하려는 사건도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미군의 즉각적인 출동으로 그들 중 총 82명을 체포함으로써 막을 수 있었다.⁶⁷⁾ 요안지역 미군 7번 초소에서도 북한인 800여명이 월경하여 추곡을 약탈하려는 사건이 있었다. 미군은 그들을 사격으로 저지하여 117명을 체포하였으나 일부는 4~50가마의

62) 「한국 경찰의 보고」(1946.8.29), 위의 자료, p. 017, pp. 015-016.

63) 「한국경찰의 보고」(1946.8.30), 위의 자료, p. 018.

64) 「미군정 특별조사실 보고」(1946.11.2), 위의 자료, pp. 032-033.

65) 「헤렌이 샤닌에게」(1946.10.31), 위의 자료, p. 455.

66) 「송도 특수정보보고」(1946.10.31), p. 039; 「하지가 치스차코프에게」(46.11.7), p. 452.

67) 「하지가 치스차코프에게」(1946.11.20), 위의 자료, p. 442.

미곡을 약탈하여 북한으로 넘어갔다.⁶⁸⁾ 이러한 사건으로 인하여 양측에 체포된 억류자들이 누적되자, 부분적으로 교환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⁶⁹⁾

미군정측에서 계속 소련군정측에 38선 통제선을 오해가 없도록 설정하자고 요구하였으나 11월까지 소련측의 반응은 여전히 부정적이었다. 이때 소련군정의 입장은 재설정 문제가 조선민들에게 나쁜 인상을 줄 뿐만 아니라 남·북 주민의 농지 소유권문제 등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또한 38선 재설정 문제는 한국민의 정치적 문제이며 미·소군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미·소 초소간의 분쟁 문제는 지역 지휘관선에서 검토하여 해결하고, 비교적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령부에서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자고 하였다.⁷⁰⁾ 이를 통해 볼 때 이미 38선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로 제고되고 있었으며, 38선 충돌 문제는 곧 미·소간의 냉전의 심화과정과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니었다.

(2) 2차 미소공동위원회 기간의 충돌

1946년 12월 30일 소련군정은 기존의 방침을 갑자기 수정하여 38선 공동조사단을 편성하자는 제안을 보내왔다. 즉 치스차코프는 미군정의 38선 재설정을 위한 공동조사단 편성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하지장군에게 전달해왔다. 소련군정이 공동조사단 편성안을 검토한 결과 최근 2,3개월 동안 급증하고 있는 38선에서의 충돌사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38선 경계선과 경비초소 등을 확실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며 그를 위한 공동조사단 편성을 다음해인 1947년 1월 20일부터 하자는 요지의 내용이었다.⁷¹⁾

소련측의 동의안을 검토한 미군정은 1947년 1월 4일 치스차코프의 제안

68) 『F중대가 제32연대에게』(1946.11.14), 위의 자료, p. 81.

69) 『하지가 치스차코프에게』(1946.11.20), 위의 자료, p. 443.

70) 『하지가 치스차코프에게』(1946.11.21), 위의 자료, p. 441.

71) 『치스차코프가 하지에게』(1946.12.30), 위의 자료, p. 412; 위의 자료, p. 304.

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공동조사 작업을 위해서는 먼저 다음 사항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먼저 조사의 형태는 38선 전 지역을 대상으로 5마일 간격으로 영구 표지를 설치하고 지형을 고려하여 미·소 통제지역을 설정하며, 양측의 통제지점의 표지는 38선 1km내 모든 마을에 영문·노어·한글로 남·북 지경표시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공동조사단의 양측 책임자 모임을 가져야 하며 조사단의 구성은 조사단장을 비롯하여 기술자 및 통역으로 한다는 것이었다.⁷²⁾

1947년 초에 접어들어서도 충돌의 상황은 전년도와 거의 유사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었다.⁷³⁾ 그러나 38선 조정문제는 미·소군정 간의 몇 차례 조정 끝에 2월 24일 해주에서 미·소 책임장교 회합으로 다시 거론되었으며, 이 자리에서 양측은 38선을 공동조사하자는 문제에 최종 합의하였다. 미 조사단으로는 장교 4명, 통역 2명, 사병 20명 등으로 구성하고, 조사단의 회합은 4월 1일 해주에서 하기로 결정하였다. 38선 1km지역에 표식을 설치하고 그 지역을 조사 대상으로 하되 북쪽은 소련군이, 남쪽은 미군이 각각 수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서울에서 연천선 서쪽까지는 소련군이 조사하여 미군의 검증을 받기로 하고, 그 동쪽은 미군이 조사하여 소련군의 검증을 받는 형식으로 하였다. 참고지도는 1925년판 1/5만 지도를 사용하기로 하였다.⁷⁴⁾ 4월 1일 미 조사단이 소련군 제7번 초소에 도착하여 38선 공동조사 작업이 개시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38선에서 소련군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소련군정측에서는 38선 북쪽에 위치하고 있던 소련군 2명이 한국경찰 4명으로부터 무고하게 사격을 받아 사망하였다고 하였으며, 그것은 미군사령부의 묵인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항의하였다. 이에 대해 관련자를 처벌하고 사망자에 대해서는 보상하도록 요구하였다.⁷⁵⁾ 미군정측에서는 사건의

72) 「하지가 치즈차코프에게」(1947.1.4), 위의 자료, pp. 305-306.

73) 「하지가 치즈차코프에게」(1947.1.24), 위의 자료, p. 292.

74) 「브라운이 치즈차코프에게」(1947.3.4), 위의 자료, pp. 276-277.

전말을 조사하여 처리하겠다고 회신하였으나, 이 사건으로 인해 공동조사단의 착수는 다소 지연되고 있었다.

한편, 이 무렵은 미·소군정 간의 정치협상 과정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다. 북한 주둔 소련군사령관 치스차코프 대장이 경질되고 그 후임으로 코로토크프 중장이 임명되었으며, 미국정부는 미소공동위원회의 즉시 속개를 촉구하는 서한을 소련측에 전달하고 만일 공동위원회가 실패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단행하겠다는 결의를 표명하였다. 이에 그동안 미국측의 수차에 걸친 회담재개 요청을 외면해 오던 소련측이 동의함으로써 공동위원회의 소련측 선발대가 서울에 도착하고 소련측 수석대표 스티코프 이하 전원이 서울에 도착하였다.⁷⁵⁾

이 기간 내 1947년 4월초부터 착수된 38선 공동조사가 완료되어 공동조사단의 최종결과서가 작성되었다. 5월 10일 38선 공동조사단의 최종 동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다. 즉, 1) 미·소 공동조사단은 4월 4일부터 22일까지 조사 작업을 수행하였고, 2) 양측의 책임자는 미군측이 후퍼트 소장, 소련군측이 볼로브레프 소장이었으며, 3) 조사단은 표지판을 다음과 같이 교체, 83개의 표지판을 교체하였고(초소번호 1-83), 38선 이북 1km 지점 66개 마을에는 소련군이 표식작업을 수행하였으며, 38선 이남 63개 마을에는 미군이 표지작업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는 미·소군의 지도상에 표기하였다. 미군은 일제 1945년판 지도를, 소련군은 일제 1919년판 지도를 사용하였다. 4) 조사결과 양측은 다음의 사항에 합의하였다. 38선상 남천리는 북한지역, 요동은 남한지역, 댐은 북한지역에 속한다. 그러나 소련군정은 관개용수 공급을 허용하며 미군정은 그것의 비용을 지불한다. 매곡리와 해주남쪽 용단리, 그리고 남북 접경지의 강과 만은 북한에 속한다. 가옥은 38선 북쪽에 소재해 있어도 이전의 소유자에게 소속한다. 마을의 구체적인 소속은 공동조사단의 합의에 따른다. 5) 거주지가 다르지만 소유권이 있는

75) 『코르토크프가 하자에게』(1947.7.31), 위의 자료, p. 140.

76) 송남현, 『해방3년사』 제2권, p. 469.

농지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농사와 수확을 허용한다는 것 등이었다.⁷⁷⁾

미·소 군정사령부는 양측 조사단 대표들로부터 이러한 조사결과를 보고 받았으며, 미소공동위원회 동안 합의된 결과에 대해 만족하며 앞으로 충돌의 건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하였다.⁷⁸⁾ 실제로 미·소 공동합의 이후 충돌의 수가 일견 줄어드는 듯하였다. 양측간에 남북쪽에 위치한 농지를 추수할 수 있도록 허가증을 발급하는 등⁷⁹⁾ 협의 이행을 위한 조치가 있었다.

4. 남·북한 정부수립 전후 38도선 충돌

38선의 상황은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시점부터는 다시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1947년 7월 9일 38선상 서부지역에서 북한경찰 43명이 38선 남쪽을 순찰중인 한국경찰 4명을 납치하는 등 빈번하게 충돌사건이 발생하고,⁸⁰⁾ 배천지역에서는 남·북간의 격렬한 사격전이 전개되었다.

소련군정측의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은 남한 경찰 20여명이 월경함으로써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소련군 2명이 사망하고 한국경찰 3명을 체포하였다는 것이다. 소련군정측은 체포된 한국경찰 3명은 ‘북조선인민위원회 법률’에 따라 처벌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⁸¹⁾ 소련군측은 이 무렵부터 38선 합의사항을 고의로 위반하면서 초소를 38선 이남 쪽에 설치하는 경우마저 있었다. 창리 부근의 경우 소련군이 초소를 38선 남쪽에 설치하자 미군정 사령부로부터 수차례 철수 요구가 있었다.⁸²⁾ 소련군측은 오히려 최근의 사

77) 「미·소군 38선 공동조사단 최종 동의서」(1947.5.10), 위의 자료, pp. 203-219.

78) 「치스차코프가 하지에게」(1947.5.30), 위의 자료, p. 193.

79) 「하지가 치스차코프에게」(1947.8.5), 위의 자료, p. 135.

80) 「하지가 코르트코프에게」(1947.7.30), 위의 자료, p. 148.

81) 「코프트코프가 하지에게」(1947.8.11), 위의 자료, p. 129.

82) 「하지가 치스차코프에게」(1947.6.27), 위의 자료, p. 172.

건들은 남한의 서북청년단과 경찰이 미군의 방조하에 사건을 야기하였다고 비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소련군이 체포한 미군 3명의 송환문제도 철저히 조사한 후에 조치할 것이라고 하였다.⁸³⁾

이러한 분위기에서 1947년 10월 14일 소련군 장교 1명, 병사 7명이 38선을 정찰 중이던 미군 2명을 또 납치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미군정측에서는 소련군이 38선 공동 결정선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군에게 무력을 사용하였으므로 즉시 조치해줄 것을 요구하였다.⁸⁴⁾ 이처럼 38선에서의 분쟁 소요는 그 횟수와 정도가 점차 격화되었다. 심지어 한국경찰의 경우 38선 접경지의 마을을 정찰할 시 미군을 동반하지 않으면 꺼려할 정도로 긴장되어 있었다.⁸⁵⁾

이 무렵 북한의 내부 움직임은 38선을 철저히 통제할 방침을 정해놓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11월 28일 내무국 산하 책임자 및 정보과장 회의에서의 김일성 훈시 내용이 주목된다. 즉, 그는 “일체의 보안대에 훈련을 실시, 특히 38대대는 ‘국경’을 지키는 정치투쟁, 경제투쟁, 사상투쟁의 의의를 정확히 재인식시키는 것이다. 인민을 잘 조직하여 자각적으로 내무활동을 원조토록 할 것. 해상선의 수상보안대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하였다.⁸⁶⁾ 이러한 북한의 내부 분위기에 비추어 보아 북한은 38선일대의 경비 병력을 크게 보완하고 있었으며, 북한의 이러한 조치에 따라 38선에서 충돌이 크게 격화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남한에서는 서북청년단과 한국경찰이 남한에 농지를 둔 북한농민이 월경하여 추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등 정면으로 맞대응하고 있었다.⁸⁷⁾

38선을 사이에 두고 양측의 충돌이 격화되자 미군정은 사건의 전모를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군정 일반명령 제34호에 의거 특별조

83) 「하지가 코프트코프에게」(1947.8.15), 위의 자료, p. 126.

84) 「하지가 코프트코프에게」(1947.10.22), 위의 자료, pp. 69-70.

85) 「미군정 38선 조사보고서」(1947.10.10), 위의 자료, p. 61.

86) 하기와라 료, 앞의 책, pp. 115-116.

87) 「코프트코프가 하지에게」(1947.11.4), 위의 자료, pp. 42-3.

사단(단장:아서 대령)이 구성되었고, 이들은 1월 3일부터 12일까지 조사하여 그 결과를 사령부에 보고하였다. 조사단의 결과 보고에 의하면 이 무렵 38선 충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⁸⁸⁾

조사단은 한국 경찰이 1947년 11월 27일 탄자리 마을을 사격하여 북한 경비대 3명에게 부상을 입혔다는 소련군정측의 주장에 대하여, 탄자리 마을은 지명이 확인되지 않으며 인근 마을에는 초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 경찰과 미군 초소를 조사한 결과 그 지역 부근에서는 최근 충돌사건이 없었다는 것이었다. 오히려 그 지점에서 11마일 떨어진 본백에서 1948년 1월 4일 한국 경찰 3명과 민간인 1명이 북한 경비대의 사격을 받아 살해되었다고 하였다.⁸⁹⁾

또 조사단은 국경지역 가운데 23마일 떨어진 지점에 한국 발음으로 장암이고, 지도상에는 천감(소가니)로 표기된 지점에서는 많은 사건이 있었으며 그중 배천지역은 한국 경찰의 공세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소련군정의 샤닌이 2번째로 지적한 신대 마을은 38선 표지가 없으며, 조사결과 그 마을은 38선 북쪽에 위치해 있으나 가옥들은 대부분 38선 남쪽에 위치해 있으며 농지는 38선 접경지에 위치해 있다고 하였다.⁹⁰⁾

이와 아울러 11월 25일에는 포천지역 미 방첩대 정보원인 정치봉이 38선 부근에서 북한경비대에 의해 납치되었고, 다음날에는 북한경비대가 월경하여 마을을 포위, 서북청년단 3명을 납치하고 1명을 사살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하였다. 이에 포천경찰서 창수지서의 한국경찰 40명이 출동함으로써 한국경찰과 북한경비대간의 사격전이 전개되었고, 한국 경찰이 그에 대한 보복으로 월경하여 북한 농부 15명을 잡아왔다고 하였다. 조사단은 그동안의 조사결과를 이와 같이 보고하고, 사건의 발단은 대부분 한국어, 영어,

88) 『주한미군사령관에게』(1948.1.20), 위의 자료, pp. 1-3.

89) 위의 자료.

90) 위의 자료.

로어 등 지명의 혼동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였다.⁹¹⁾

이 조사 결과는 소련군정측에 전달되었고 또 새로이 분쟁의 소지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38선을 재설정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소련군정측에 의해 묵살되었다.⁹²⁾ 오히려 38선의 상황은 하지장군이 지적하듯이 ‘북한 경비대의 대담함은 남한인의 안녕을 위협할 정도’였다.⁹³⁾ 그러나 이 무렵 소련군정측은 오히려 옹진쪽의 한국 경찰이 38선을 침범하여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난하였다.⁹⁴⁾

이에 미군정은 예하부대에 다음과 같은 38선상에서의 행동지침을 하달하였다. 소련군 초소가 미군초소와 매우 근접해 있고 또 북한 경비대가 38선 가까이에서 움직임에 따라 충돌 사건이 증가되어 왔다. 따라서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먼저 38선 정찰시 너무 가까이 근접하지 말고, 모든 정찰 병력에게 알려 사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였다. 또한 38선상의 미·소 통제지역 표지가 없어진 경우 즉각 보고하도록 하였다. 북한 경비대가 38선을 월경하였을 경우 체포하되, 소련군과 전쟁으로까지 확산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였다.⁹⁵⁾ 따라서 이 무렵 1948년 6월 2일부터는 38선에 배치된 미군은 군정의 지시에 따라 38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정찰활동까지 통제하여 지정된 장소만을 정찰하도록 하였다.⁹⁶⁾

미군정의 이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경비대에 의한 38선 월경으로 인해 38선의 상황은 이전보다 규모면에서 격화되고 있었고, 그 월경의 성격면에서도 다소 앞의 기간과는 차이가 있었다. 즉, 이 무렵 북한의 38선 침투의 목적중 하나는 남로당의 보급을 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⁹⁷⁾ 그러나

91) 위의 자료.

92) 「코프트코프가 하지에게」(1948.1.26), 위의 자료, p. 112.

93) 「하지가 코프트코프에게」(1948.1.22), 위의 자료, p. 113.

94) 「하지가 코르크코프에게」(1948.1.23), p. 115.

95) 「미 제31, 제32연대에게」(1948.6.2), 위의 자료, pp. 129-130.

96) 「미 제24군이 제7사단에게」(1948.6.7), 위의 자료, pp. 140-142.

97) 「미 제32연대 제2대대에게」(1948.8.13), 위의 자료, p. 54.

38선 부근에 배치된 미군 정찰병력은 미군정의 정찰통제로 인하여 38선 충돌에 관한 사건 조사마저 미군정사령부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한 상황이었다.

5. 38선 군사적 충돌의 성격

한반도 38선 문제는 미·소군이 진주한 직후부터 정치적인 문제로 제고되고 있었으며, 38선상에서의 충돌은 냉전의 심화과정과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니었다.

해방 직후 미·소군 병력이 도로차단 초소를 설치한 후 38선은 잠재적인 충돌 가능성을 안고 있었으나, 이 시기에는 38선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공공연히 남·북을 왕래하고 있었고 또 미·소 냉전이 표면화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다. 그러나 미·소군의 협조체제가 무너지면 곧바로 무력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었다.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를 앞두고 미·소군정간에는 이미 38선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다. 즉, 해주-서울간 열차운행에 관한 문제, 남·북간 우편교환문제, 미군의 옹진으로의 육로 이용에 관한 문제, 접경지에 위치한 동산 및 부동산 소유권 문제, 민간인 접경지 월경 금지 문제, 관개수로 이용 문제, 일본인 월남문제 등이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시점부터 38선을 두고 미·소군에 의한 월경분쟁이 문제화되기 시작하였다.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기간 미군정측은 소련군정측에 38선 통제선을 오해가 없도록 설정하자고 요구하였으나, 소련군정은 재설정 문제가 한국민들에게 나쁜 인상을 줄 뿐만 아니라 남·북 주민의 농지 소유권문제 등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하여 반대하였다. 소련측은 38선 재설정 문제

는 한국민의 정치적 문제이며 미·소군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 무렵 발생한 다양하게 충돌사건은 남·북한의 경찰과 청년단체들 간의 갈등으로 악화된 측면이 있었다.

그것은 아직 38선 접경지에 확실한 표식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데도 원인이 있었지만, 소련군이 의도적으로 38선 이남지역에까지 내려와 부대를 배치한데 연유하는 것이었다. 주한미군사령관 하지는 주북한 소련군사령관 치스차코프에게 최근 월경사건이 증가되고 있는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1945년 가을 소련군측과 협의하여 월경자는 체포하여 가까운 초소로 넘기도록 합의하였으나 그 내용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38선 부근에서의 심각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38선 지점을 분명히 표식하자고 거듭 제안하였다. 치스차코프는 사건들의 전말이 명확치 않다는 입장이었다.

1946년 5월 7일 미소공동위원회가 무기 휴회되면서 38선의 정세는 한층 긴장되었다. 38선 상황이 긴박해지면서 소련군정측에서는 북한의 보안국을 일층 강화시키고 있었다.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는 시점에서 소련군정측에서는 '수준 높은 보안간부와 경비대원을 38도선에 배치함과 동시에 정보·사찰 등의 공작을 강화'함으로써 38선의 긴장을 가중시켰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분위기속에서 소련군정측은 미군 항공기가 38선 이북을 월경한데 대해 강한 불만을 피력하여 항의하였다.

한편 이 무렵 미소공동위원회는 미·소간의 심각한 의견차이로 인해 일단 결렬되었으나, 그동안 양측에서 잠정 합의한 38선 표식작업을 위한 공동조사반 운영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하여 실무 작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소군 38선 조사 작업은 이 무렵 극심하게 만연되고 있던 콜레라 전염병으로 인해 불가불 연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처럼 38선 접경지 마을에서 위반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한 것에는 마을의 소속이 미·소 어느 쪽의 통제를 받는지 불명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았고 또 소련군이 38선 이남에 위치하여 미군과 마찰을 빚은 사건도 있었다. 기본적으로 이시기의

분쟁은 38선 통제의 표식이 결정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진 것이었다.

소련군과 북한경비대, 북한청년단체 등의 월경 약탈건수는 추수기인 10월에 접어들어 더욱 증가하고 있었다. 이런 사건은 주로 38선 표식이 불명한 지역이나 군이 상시 배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미군정측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38선 경비를 위한 경찰부대를 신설하여 투입하기로 하였다. 미 제7사단 보고에 의하면, 사단의 경찰활동을 줄이고 38선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38선의 초소를 증가하고 증가된 초소에는 한국경찰을 투입한다는 것이었다. 경찰병력의 편성과 초소의 설치는 8월 29일 한국경찰측이 준비한 계획서에 의거하였으며, 경찰들의 경찰은 소로까지를 통제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10월 시점 미군정이 38선 일대의 경비를 보강하기 위해 한국 경찰병력을 투입할 무렵 소련군과 북한경비대의 월경사건은 더욱 증가하였으며 충돌의 강도도 격화되고 있었다. 이 무렵 충돌사건이 증가되고 있었던 데에는 남·북의 경찰과 청년단체간의 갈등 격화도 한 원인이 되었다.

한편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 시기 미·소 군정사령부는 양측 38선 조사단을 구성하는데 합의하였고 그 대표들로부터 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충돌의 건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실제로 미·소 공동합의 이후부터 다소 충돌의 수가 줄어드는 듯하였으나, 공위가 결렬된 시점부터는 다시 이전처럼 악화되었다.

즉, 1947년에 접어들어 미·소군정 간의 정치협상 과정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다. 북한 주둔 소련군사령관 치스차코프 대장이 경질되고 그 후임으로 코로토코프 중장이 임명되었으며, 미국정부는 미소공동위원회의 즉시 속개를 촉구하는 서한을 소련측에 전달하고 만일 공동위원회가 실패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단행하겠다는 결의를 표명하였다. 이에 그동안 미국측의 수차례 걸친 회담재개 요청을 외면해 오던 소련측이 동의함으로써 공동위원회의 소련측 선발대가 서울에 도착하고 소련측 수석대표 스티코프 이하 전원이 서울에 도착하였다.

이 기간 내 1947년 4월초부터 착수된 38선 공동조사가 완료되어 공동조사단의 최종결과서가 작성되었다. 미·소 군정사령부는 양측 조사단 대표들로부터 이러한 조사결과를 보고받았으며, 미소공동위원회 동안 합의된 결과에 대해 만족하며 앞으로 충돌의 건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실제 미·소 공동합의 이후 충돌이 일견 줄어들 듯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는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시점부터는 다시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1947년 7월 9일 43명의 북한경찰 43명이 38선 남쪽을 순찰중인 한국경찰 4명을 납치하는 등 빈번하게 충돌사건이 발생하고, 배천지역에서 남·북간의 격렬한 사격전이 전개되었다.

38선에서의 분쟁 소요는 그 횟수와 정도가 점차 격화되었다. 심지어 한국경찰의 경우 38선 접경지의 마을을 정찰할 때 미군을 동반하지 않으면 꺼려할 정도로 긴장되어 있었다. 이 무렵 북한의 내부 움직임은 38선을 철저히 통제할 방침을 정해놓고 있었다. 이에 대해 남한에서는 서북청년단과 한국경찰이 남한에 농지를 둔 북한농민이 월경하여 추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등 정면으로 맞대응하고 있었다. 미군정의 여러 가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경비대에 의한 38선 월경으로 인해 38선의 상황은 이전보다 규모면에서 격화되고 있었고, 그 월경 성격면에서도 다소 앞의 시기와는 차이가 있었다.

공위 결렬 이후의 38선 상황은 하지가 지적하듯이 ‘북한 경비대의 대담함은 남한인의 안녕을 위협할 정도’였다. 그러나 이 무렵 소련군정측은 오히려 옹진쪽의 한국 경찰이 38선을 침범하여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이 시기부터 북한경비대가 월경함으로써 38선의 상황은 이전보다 규모면에서 격화시켰고, 또 북한은 남로당을 지위하기 위해 게릴라를 대규모로 침투시키고 있었다.

정부 수립을 전후하여 38선 접경지에서는 약탈·납치·보복 등 이질적 체제에서 오는 대항의식과 경쟁심·적대감이 가열되고 있었다. 이에 한국군은 북한의 게릴라 침투와 민간인의 월경을 봉쇄하기 위해 경비를 강화하였

으며, 북쪽에서는 이미 38선 경비를 맡고 있던 북한주둔 소련군이 철수하기 시작하면서 경비를 인수하여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한국정부도 반공청년들로 구성된 특별경비단을 38선에 배치하고 또 주한 미군이 1948년말 대부분 철수하면서 한국 군·경이 부분적으로 초소를 인수하기 시작하였다. 38선 접경지에서 완충의 기능이 사라지게 되자 그동안 잠재되고 있던 분쟁가능성이 표면화되었다.

(원고투고일 : 2005. 4. 14, 심사완료일 : 2005. 6. 4)

주제어 : 냉전, 미·소군정, 38도선 충돌, 점령정책, 6·25전쟁

K C I

<ABSTRACT>

The Cold War and the Violation of the 38th Parallel(1945-1948)

Yang, Yong-j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nd analyze the Violation of the 38th Parallel, 1945-1948. Most of previous articles on this subject have been simply concerned for the origin of the Korean War. However, this thesis has traced what is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cold War and the Violation of the 38th Parallel.

The South and North Korean Separate Government, which politically was under the international circumstances of the Cold War structure, competed with each other for the reinforcement of their regime and military forces. At this level, this paper analyzed the courses of both's reinforcement of the regime, the military build-up, and the violations of 38th parallel, operation plan, leadership and command structure.

In this periods, the U.S. policy toward Korea had been driven with the same interrelationships as the breakdown of U.S.-U.S.S.R Joint Conference, the founding of the Separate government, the withdrawal of U.S. army.

The violation's event of 38th parallel, which contained political intention of both sides, was developed with relations of the political claim by military means, so it's mean had a variety according to periods of events too. Both used of the violation of 38th Parallel to amplify their enmity greatly.

When the both army took over the 38th Parallel's patrol responsibilities

and began to build up defensive positions, the both army guards disrupted the work by firing to each other.

In consequence, these complex historical factors contributed to the origin of outbreak of the Korean War. We also could know these factors had made the Korean War for a civil war originating in the national problems and an international war originating at Cold War.

Key Words : Cold War, U.S. and Soviet Forces Military Government, Violation of 38th parallel, Occupation policy, Korean War

K C I